

#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3433 |
|----------|------|

발의연월일 : 2016. 11. 9.

발의자 : 유성엽 · 황주홍 · 정동영

이용호 · 송기석 · 이용주

김관영 · 김종희 · 김경진

김광수 · 이동섭 · 조배숙

김삼화 의원(13인)

### 제안이유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일선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아공교육

체제발전을 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의 유아교육에 관한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무상 교육·보육과정 정책 등 유아공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국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유치원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전입금을 세입으로 함(안 제3조).
- 다. 특별회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위하여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지원금을 세출로 함(안 제4조).
- 라. 교육부장관은 시·도에 대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하고 사업별 지원 예정 금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

조).

## 참고사항

- 가.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유아교육에 관한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무상 교육·보육과정 정책 등 유아공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6조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조에 따른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사

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지원금

## 2.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의 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 교부금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7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시·도에 대한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한다.

②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별 지원 예정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